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6일

발 의 자 : 이용진, 소형준, 양순임, 고영옥,
경수현, 강수진, 박영섭, 임태근,
이인순, 이관우, 임현주, 정윤주,
김육영, 김경이

1. 제안이유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4) 내용의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가 포함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다. 상위법의 전기자전거 이용 대중화 취지에 맞추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명)

나.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0

조~13조, 안 제15조제1항)

다.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라.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신설함(안 제5조제2항목4~5)

마.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와 지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7조의2)

바. 위탁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3. 9. 26. ~ 2023. 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계획”을 각각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4.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

한 정비·개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 등)”을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정비소·대여소”를 “자전거수리센터·대여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각각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전거정비소”를 각각 “자전거수리센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를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 다. 5.·6. (생략)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 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 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생략) 2. 자전거이용시설물의 설치와 <u>정비계획</u>	<u>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전거수리센터”란 ----- ----- ----- --. 5.·6. (현행과 같음)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 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u>활성화계획</u>----- ----- -----. 1. (현행과 같음) 2. ----- <u>활성화계획</u>

3. (생략)

<신설>

<신설>

4.·5. (생략)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 등) ①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법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

-- 활성화계획-----
-----.

제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② -----
----- 자전거수리센터·대여소-----
--.

③ -----
---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

④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전거수리센터-----

③ -----

--- 자전거수리센터 -----

수 있다.

제12조(시험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곳에는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험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전거수리센터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

-----.

제15조(위탁운영) ① -----
-----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

-----.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